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8.(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장정희 의원외 8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장정희 의원 외 8명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69)

2.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마포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나.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조사·연구, 교육 훈련 등 지원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 기본법」 제23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1.(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마포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5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조사연구, 교육 훈련 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의 한 유형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진행과정을 보면 의사소통 단절과 함께 방으로 침거, 명확한 이유가 없는 등교거부,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며,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대인기피증,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기 보다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최근에는 가정불화, 직장내 왕따, 사업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상담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당사자 및 부모들의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하여 정보 교환 및 자조모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민생활 복지과	신희선 (8810)	김희선 (88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김민음
연락처	02-3153-8807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